

『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김혜련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17.12.19. 「장애인복지법」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간의 상충 방지를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.

□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안 제6조제1항을 ‘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자’ 에서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 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